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NO.2019-IMO-05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30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20 August 2019

Person in charge : Kim Hoi-Jun

Subject : 싱가포르 국적선의 BWMS Commissioning Test 시행에 관한 지침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이하 BWM 협약이라 함)은 2004년도에 채택된 국제협약으로서, 선박의 평형수를 통한 유해미생물 및 병원균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이며, 2017년 9월 8일 이후로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MEPC 74차(2019.05)는 선박에 설치된 BWMS에 대하여 최초 또는 BWM 추가검사 시에 Commissioning Test가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BWM 협약의 E-1.1 및 E-1.5 규칙의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의 목적은 기구가 개발한 지침서를 고려¹⁾하여 선박에 설치된 BWMS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싱가포르 해사청에서는 MPA Shipping Circular 9를 발행하였으며, 2019년 9월 8일 후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탑재되는 BWMS²⁾에 Commissioning Test가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기술정보는 BWM 협약의 E-1.1 및 1.5 규칙 개정안의 발효 전 Commissioning Test의 강제 시행에 관한 싱가포르 기국지침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에 관련된 요건 및 참조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여 드리오니 싱가포르 국적선의 선주, 조선소, 평형수 시험기관 및 관련단체들께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요건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1. Commissioning Test는 BWMS 탑재 및 평형수 관련 장비들(펌프 및 배관 등)이 점검되고 난 후 현장검사원에게 만족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함.
2. Commissioning Test를 위하여 수집된 평형수 대표샘플은 최소 적절한 지표분석 방법

1) BWM.2/Circ.70 : Guidance for the commissioning testing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s

2) BWM 협약의 B-3 규칙에 따라,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들은 D-2 기준의 만족을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되며, 2017년 9월 8일 전에 건조된 선박들은 2019년 9월 8일 이후에 도래하는 IOPP 정기검사 시까지 D-2 기준의 만족을 위한 BWMS의 탑재가 요구됨

(BWM.2/Circ.42/Rev.1)을 통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이 분석결과가 D-2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또한, Commissioning Test의 방법 및 상세결과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가 IBWM 협약증서의 발급 전 검증을 위하여 현장검사원에게 제출되어야 함.

3. Commissioning Test는 선주/관리사/조선소/계약자 및 장비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Commissioning Test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은 BWMS의 제조업체로부터 독립되어야하고 IBWM 협약증서를 발급하는 선급(RO)으로부터 인정되어야 함.
4. Commissioning Test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은 생물학분야, 환경과학분야와 관련된 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 이어야 함.
5. Commissioning Test가 장비의 장비설계제한(System Design Limitation)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3개월 미만의 단기 IBWM 증서가 발급될 것이며, 동 기간 내에도 Commissioning Test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의 연장은 MAP의 승인을 득해야 함.
6. 자세한 사항은 첨부 MPA Shipping Circula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MAP Shipping Circular No.9 - 1부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조선소,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